석유사업법시행령(안)입법예고

산업자원부

산업자원부공고 제2003 - 163호

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03년 8 월 7 일
산업자원부장관

개정사유 및 주요골자

○도시가스의 수급안정과 경쟁에너지와의 가격구조 불균형을 해소하고 석유비축, 해외자원개발, 대체에너지개발 보급 등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위해 추진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상의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중 하나인 석유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을 산업용을 제외한 천연가스에 대해 1톤당 9,750원에서 1톤당 33,934원으로 인상함(안 시행령 제24조)

○부과금 적용이 면제되거나 전액 환급되었던 발전용 석유에 대해서도 리터당 14원에 해당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이 부과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시행령 제23조, 제24조, 제27조)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제23조(부과금의 징수대상자)	제23조(부과금의 징수대상자)
① (생 략)	① (생 략)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석유정제업자·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석유의 수입·판매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	② ----------
1. ~ 2. (생 략)	1. ~ 2. (생 략)
3.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로서 그 전기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유황중유(탈황설비를 갖춘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유황중유를 포함한다.)를 수입하는 석유수출입업자	3. 〈삭 제〉
4. ~ 5. (생 략)	4. ~ 5. (생 략)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생 략)
제24조(부과금의 부과기준등) ①법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.	제24조(부과금의 부과기준등) ①----------
1. (생 략)	1. (생 략)
2.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 : 1톤당 9,750원	2.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 : 1톤당 33,934원. 다만,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로서 그 전기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1톤당 18,382원
3. ~ 6. (생 략)	3. ~ 6. (생 략)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생 략)
제27조(부과금의 환급)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한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.	제27조(부과금의 환급)①----------
1. ~ 2. (생 략)	1. ~ 2. (생 략)
3. 중유·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를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에게	3. 천연가스를 전기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에게 일반전기사업용 또는 발전사

현 행	개정안
일반전기사업용 또는 발전사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. 다만, 고유황중유는 탈황시설을 갖춘 전기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.	업용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전기사업용 부과금액을 적용하여 차액을 환급한다.
4.~ 6. (생 략)	4.~ 6. (생 략)
7. 〈신 설〉	7. 천연가스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산업용 연료로 공급하는 경우 제24조제1항제2호에 의한 부과금과 톤당 9,750원과의 차액을 환급한다.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생 략)